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290 |
|----------|-----|

2020. 9. 17.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7. 2. 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

나. 상정의결

-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0. 9. 17.)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도시환경국장 안재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자치구로 권한위임 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을 위하여 강남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지구단위계획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자치구로 권한위임 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의 적법한 행정절차 도모를 위하여 강남구 공동위원회 신설(안 제10조의2)
- 나.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 신설을 통해 내실 있는 공동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권한의 위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0. 05. 29. ~ 2020. 06.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강남구 공동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도록 권고함
 - 공동위원회 운영방침 수립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토록 명시하겠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상원)

-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자치구로 권한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을 위하여 강남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지구단위계획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안 제2장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으로 하고 안 제10조의2(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및 안 제10조의3(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¹⁾에 부합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3조제2항²⁾에 따라 자치구로 권한 위임된 사무 (※ 별첨 [별표4] 참조)를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 안 제10조의2제2항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을 각 호로 규정한 바 각 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안 제10조의3제3항에는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³⁾과 연계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그간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의 운영현황(회의개최일수, 회의 내용 등) 설명과 함께 공동위원회 구성에 따른 운영현황(예상)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됨
- 한편, 강남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첨부자료[강남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현황]와 같은 바 위임된 권한과 연계 설명이 요구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권한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8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4(별첨참조)**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② 법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할 것
3. 공동위원회의 위원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도·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지사, 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군의 경우에는 부군수로 할 것

【 】

[별표 4] <개정 2020. 1. 9.>

권한위임 사무 (제68조 관련)

| 사 무 명 | 관계법령 |
|---|---|
| <p>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시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계획시설은 제외하며,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내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p> <p>가. 도로(폭 12미터 이하 또는 구도에 한함)</p> <p>나. 광장(폭 12미터 이하 도로 또는 구도에 접속되는 경우에 한함)</p> <p>다. 주차장(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p> <p>라. 하천(소하천에 한함)</p> <p>마. 체육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p> <p>바. 공공공지(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함)</p> <p>사. 공공청사(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로 한정함)</p> <p>아.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변경결정과 유치원·새마을유아원에 한함)(개정 2012.7.30)</p> <p>자. 문화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한정하되,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대상은 제외함)</p> <p>차. 수도(저수용량이 5천톤 이하의 배수지 및 가압장에 한함)</p> <p>카. 전기공급설비(소형변전소 154Kv 미만 및 이와 관련되는 송배전시설에 한함)</p> <p>타. 가스공급설비(가스배관시설로 한정함)</p> <p>파. 방수설비</p> <p>하. 사회복지시설</p> <p>거.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는 제외)</p> <p>너. 청소년수련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함)</p> <p>더.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으로 한정하되, 면적의 축소 또는 폐지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p> <p>러. 시장(市場). 다만,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p> | <p>○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조례 제6조, 제7조</p> <p>○법 제29조·제30조 영 제23조·제25조</p> |

| 사 무 명 | 관계법령 |
|---|---|
| <p>4.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단, 특별계획구역내에서 시장이 결정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은 제외한다).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및 자목의 경우에는 2회 이상 나누어 변경하는 때에는 총 변경되는 합을 말한다.</p> <p>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 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p> <p>나.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p> <p>다.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 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획지면적 변경인 경우</p> <p>라.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p> <p>마.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p> <p>바. 건축선(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 등을 포함한다)의 변경 또는 신설, 폐지의 경우</p> <p>사.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p> <p>아.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권자를 시장으로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p> <p>자.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 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다만, 용도지역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외한다)</p> <p>차.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신설, 폐지를 포함한다)</p> <p>카.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p> <p>타.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p> <p>파.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p> <p>하.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p> <p>거.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p> <p>너.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p> <p>더. 공개공지, 보행전용통로, 보차혼용로 등 대지내 공지 위치 변경(신설, 폐지를 포함한다.)</p> | <p>○법 제30조제5항 단서 영 제25조제3항</p> <p>○법 제30조제5항 단서 영 제25조제4항 조례 제18조</p> |

【 】 (※집행부 자료 재구성)

■ [강남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현황]

○ 현재 25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11.36km²으로 전체 강남구 면적(39.54km²) 대비 28.7%를 차지

| 연번 | 구역명 | 위치 | 면적(㎡) | 구역결정일 | 계획결정일 | 비고 |
|----|----------------------|-----------------------------------|----------------------------|-----------|-----------|--------------------|
| 1 | 국제교류복합지구 | 코엑스~종합운동장 일대 | 1,663,652 (강남1,064,742) | '84.07.04 | '16.09.08 | 재정비 추진 |
| 2 | 테헤란로제2지구 | 강남역사거리~삼성지하보도 | 959,160 | '87.02.04 | '09.07.02 | 재정비 추진 |
| 3 | 양재지구중심 | 도곡동 957번지일대 | 30,090 | '96.10.08 | '99.08.21 | 재정비 추진 |
| 4 | 개포지구중심 | 개포동 1238번지일대 | 25,070 | '97.06.10 | '99.06.08 | 재정비 추진 |
| 5 | 압구정로변 | 한남대교남단~청담동 | 159,569 | '05.06.10 | '02.06.22 | 재정비 추진 |
| 6 | 논현지구 | 논현동 129번지일대 | 76,430 | '95.11.09 | '06.08.10 | |
| 7 | 청담지구 | 청담동 47번지일대 | 46,592 | '97.06.10 | | |
| 8 | 대치지구 | 대치동 937번지일대 | 58,440 | '98.07.02 | | |
| 9 | 개포지구 | 개포동 158번지일대 | 20,070 | '95.12.01 | | |
| 10 | 역삼지구 | 역삼동 756번지 일대 | 41,495.8 | '77.03.29 | | '16.12.15 |
| 11 | 대치택지개발지구 | 개포동 12, 13번지일대 | 239,686 | '89.03.21 | '10.07.15 | |
| 12 | 수서택지개발지구 | 수서동 712번지일대 | 1,335,246 | '89.03.21 | '12.03.02 | |
| 13 | 개포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용지) | 도곡동 410, 개포동 660, 일원동 619번지 일대 | 3,937,263 | '02.06.17 | '11.06.23 | |
| 14 | 개포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 도곡동411 일대 | 219,759 | '11.09.22 | '11.09.22 | 1-1지구 |
| | | 개포동1266 일대 | 499,298 | '11.09.22 | '11.09.22 | 1-2지구 재정비 추진 |
| | | 개포동171, 일원동629 일대 | 567,097 | '16.08.25 | '16.08.25 | 2-1,2-2,4지구 |
| 15 | 926정거장 주변 | 역삼동 650번지 일대 | 38,770 | '12.03.08 | '12.03.08 | |
| 16 | 아랫반고개마을 | 세곡동 168-6번지 일대 | 29,863 | '10.07.01 | '13.02.28 | GB해제 |
| 17 | 교수마을 | 자곡동 271-1번지 일대 | 9,666 | '13.01.24 | '13.01.24 | 취락지구 |
| 18 | 한국과학기술회관 | 역삼동 635-2번지 일대 | 7,972.2 | '15.12.24 | '15.12.24 | 준주거상향 |
| 19 |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 | 세곡동 294번지 일대 | 263,814 | '05.06.10 | '05.12.29 | 국민임대(SH) |
| 20 |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일원 | 938,993 | '09.06.03 | '09.09.28 | 보금자리(LH) [사업준공] |
| 21 |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 수서동, 자곡동, 율현동 일원 | 770,488 | '09.12.03 | '10.04.27 | 보금자리(SH) |
| 22 | 논현동202-7 역세권청년주택 | 논현동 202-7 | 1,556.3 | '17.09.28 | '17.09.28 | 3종→상업 |
| 23 | 논현동278-4 역세권청년주택 | 논현동 278-4, 278-3, 278-17 | 2,213.2 | | | 3종→준주거 |
| 24 | 논현동40 | 논현동 40 | 13,161 | '17.10.26 | '17.10.26 | 학교시설 폐지 |
| 25 | 역삼동 653-4 | 역삼동 653-4 | 6,908.1 | '19.07.11 | '19.07.11 | 체육시설 폐지 |
| 합계 | | | 11,363,412.6 | | |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따로 분리되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해주기 바람
- 답 변 : 우리구의 경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매년 6회 ~ 10회 정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회의는 총 6회 개최되었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음
- 질 의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 답 변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계획중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결정(변경) 사항을 다루고, 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해서 25인 이하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임
- 질 의 : 강남구의 도시계획은 몇 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지
- 답 변 : 기본적인 도시계획은 5년 단위로 세우고 있음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90 |
|----------|-----|

제출년월일 : 2020. 7. 2.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도시계획과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자치구로 권한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을 위하여 강남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지구단위계획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치구로 권한위임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의 적법한 행정절차 도모를 위하여 강남구 공동위원회 신설(안 제10조의2)
- 나.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 신설을 통해 내실 있는 공동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권한의 위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0. 05. 29. ~ 2020. 06.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강남구 공동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도록 권고함
 - 공동위원회 운영방침 수립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토록 명시하겠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으로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0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3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
2. 서울특별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3.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 구 건축위원회 위원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소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⑤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4조제6항부터 제13항,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 서울특별시 강남구</u> <u>도시계획위원회</u> <u><신 설></u></p> |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 서울특별시 강남구</u> <u>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u> <u>제10조의2(공동위원회의 설치 및</u> <u>기능) ① 법 제30조제3항 및 서울</u> <u>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3조제2</u> <u>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건</u> <u>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u> <u>또는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u> <u>강남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u> <u>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u> <u>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서울</u> <u>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공동</u> <u>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u> <u>도록 정한 사항</u> <u>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u> <u>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에</u> <u>게 위임된 사항</u> <u>3.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지</u> <u>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u> <u>자문</u> <u>4.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에 관련</u> |

<신 설>

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 구 건축위원회 위원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소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⑤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4조제6항부터 제13항,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자치구로 권한위임 된 사무의 적법한 행정절차 도모를 위하여 강남구 공동위원회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개정안이 아님

3. 미첨부 사유

- 해당 안건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자치구로 권한위임 된 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강남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개정안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도시계획과 지방시설서기보 김동희(02-3423-6122)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연 락 처 | (02) 3423 - 6122 |